문경관광진·공단 노사협의회규정 중 일부 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23. 06. 30. 문경관광진**흥공단이사장**

문경관광진흥공단 규정 제247호

문경관광진흥공단 노사협의회규정 중 일부개정 규정(안)

문경관광진흥공단 노사협의회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 1(노동조합과의 관계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 1(노동조합과의 관계)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기타 모든 활동은 이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.

제23조(공지)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(공지) <u>의장은</u> 협의회<u>에서</u> 의결된 사항을 <u>10일 이내에 공고하여야</u> 한다.

제25조(임의중재) 제1항 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(임의중재) ① (생 략)

1. ~ 2. (생 략)

3. 그 밖에 중재가 필요한 경우

제26조(고충처리위원)제1항 내지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6조(고충처리위원<u>회</u>) ①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<u>고충</u> 처리위원회를 설치·운영한다.